

강북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실행추진단 사무국 사업지원활동가 근로계약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강북구)과 ○○○(이하 계약상대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강북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계약상대자와의 수행업무, 근로계약, 복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 및 계약기간 등)

- ① 신 분 : 강북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실행추진단 사무국 사업지원 활동가(기간제 근로자)
- ② 계약기간 : 2016. 3. 14. ~ 2016. 12. 31.
- ③ 근 무 지 : 강북구청 교육지원과(강북혁신교육지구 실행추진단 사무국)

제3조(수행업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강북구 또는 강북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① 혁신교육지구 사업팀 추진 활동 및 분과 네트워크 지원 업무
- ② 혁신교육 상담 및 홍보업무 지원

제4조(보수)

- ① 강북구는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보수를 익월 5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며, 별도의 상여금은 청구할 수 없다.
- ② 다만, 계약해지·무단이탈·무단결근 등으로 당해 월의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등의 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제5조(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강북구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가입과 부담에 있어 개별 법률이 정하는 부담률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제6조(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계속 근로연수 1년당 평균임금 1개월분을 지급한다.

제7조(근로시간) 계약상대자의 근로시간(휴계시간 포함)은 09:00~18:00로 하며, 휴무일(토·일·공휴일 및 기타 법으로 명시된 휴무일) 근무 시에는 강북구의 승인을 받아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복무 등) 계약상대자의 복무 등 근무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업무상으로 취득한 정보나 비밀을 외부 또는 제3자에게 절대 누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소속 자치단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강북구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실적 평가) 강북구는 제3조에 규정된 담당업무와 근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매년 재계약 체결 전에 정기평가하고 필요시 수시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해지의 사유) 강북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다.

-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② 계약상대자가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능력이 불량하여 강북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업무수행에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③ 제11조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점수가 평가기준 이하일 때
- ④ 강북구 업무의 조정 또는 예산의 폐지, 감소 등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 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무단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⑥ 계약상대자가 강북구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 ⑦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13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강북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3월 10일

강북구	계약상대자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주소 :
성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박 검 수 (인)	성명 : (인)